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『구립독산1동어린이집』 재위탁 보고

## 1. 제안이유

우리 구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운영위탁체를 선정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금천구의회에 보고하여 추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시설개요

시설명	소재지	시설현황		위탁체 현황		원장	보육정원	비고
		연면적 (㎡)	층수	위탁체명	위탁기간			
구립 독산1동 어린이집	벚꽃로 18길 33 (독산1동)	350.64	지하1층, 지상1~2층	개인 서정순	2018.11.20. ~2021.6.30.	서정순	74	재위탁 (변경위탁)

※ 원장 정년 퇴직일 : 2021. 6. 30.

### 나. 주요위탁 내용

#### 1) 위탁업무

- ▶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
- ▶ 보육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육사업 수행  
(교육·영양·건강·안전·부모에 대한 서비스·지역사회와의 교류)
- ▶ 운영시스템(CCTV등), 어린이집 관련서류 개인정보처리업무 수행

2)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경쟁에 의한 재위탁(변경위탁)

3) 위탁기간 : 위탁일로부터 5년(2021. 7. 1. ~ 2026. 6. 30.)

#### 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

- 1)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, 제14조, 제17조
- 2)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, 제4조의3

#### 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1)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효과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
- 2) 구립어린이집의 책임성 있는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추구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1)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3조, 제14조, 제17조
- 2)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, 제4조의3

# 관 련 규 정

## ○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

**제13조(위탁운영)**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.<개정 2014.12.30.>

②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구청장은 미리 위탁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을 구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1.3.18., 2014.12.30.>

③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4조제4항 및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제2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로 결정한다.<개정 2011.3.18., 2014.12.30.>

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,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, 어린이집 운영계획,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, 심사항목 배점 및 동점 처리 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의 심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.<개정 2011.3.18., 2014.12.30.>

**제14조(위탁계약)**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.

② 위탁기간 만료로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이 만료 된 기관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 실적, 평가인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,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계약할 수 있다. 평가 및 심의를 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 영유아 또는 방과 후 아동을 보육 의뢰하고 있는 보호자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<개정 2014.12.30.>

④ 재수탁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12.30.>

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재위탁 심의결과를 통보하되, 재위탁 부결시에는 재위탁 부결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⑥ 수탁자는 재위탁 선정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.

⑦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,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[조항 전부개정 2011.3.18.]

**제17조(위탁기간)** ①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,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. 다만,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위탁운영체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있다.  
<전문개정 2020.12.31>

## ○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**제4조(민간위탁사무의 기준)**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<개정 2016.7.18>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<개정 2016.7.18>
4.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<개정 2016.7.18.>

**제4조의3(구의회 동의 및 보고)** ①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 라 한다)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민간위탁사무의 명칭
2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3. 민간위탁사무 또는 민간위탁시설 내용
4. 민간위탁 기간
5. 수탁자 선정방식
6.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

[본조신설 2020.7.17]